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7가단5157009 판결 [계약보증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19나3825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7가단5157009 판결

전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한솔

피고B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박세윤

변론 종결2018. 12. 21.

판결 선고2019. 6.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308,27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2017. 8.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2017. 6. 7.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 및 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3. 12. 6. 부산 연제구 D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1공구)의 도배공사(이하 '이 사건 부산현장 도배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741,000,000원(이후 736,970,000원으로 변경,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3. 12. 6.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1. 구리시 E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의 도배공사(이하 '이 사건 구리현장 도배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위 구리현장 중 F블록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189,700,000원, 공사기간 2013. 12. 11.부터 2015. 4. 30.까지, 위 구리현장 중 G블록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133,500,000원, 공사기간 2013. 12. 11.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 C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채무불이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를 보증채권자, 피고를 보증인으로 하여, 2013. 12. 6.경 이 사건 부산현장 도배공사에 대하여 보증금액 76,448,229원, 보증기간 2013. 12. 6.부터 2015. 6. 30.까지로 하는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1.경 이 사건 구리현장 도배공사 중 F블록공사에 대하여 보증금액 19,132,194원, 보증기간 2013. 12. 11.부터 2015. 4. 30.까지로 하는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구리현장 도배공사 중 G블록공사에 대하여 보증금액 13,387,781원, 보증기간 2013. 12. 11.부터 2015. 4. 30.까지로 하는 계약이행보증계약(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계약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보증서(민간 채권자용)

제1조(보증책임)

피고(이하 '조합'이라 합니다)는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가 앞면 기재 계약과 관련하여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합니다)에게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 및 약관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제3조(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권자가 보증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을 말합니다.

제6조(보상범위)

① 조합이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

② 실제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나머지 계약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가된 금액
2. 채무자가 이미 이행한 계약 중 계약내용 기타 지시서를 위배한 시공으로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지출했거나 지출할 금액. 다만, 기성검사 시 이미 발생한 하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보증채무 이행금액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를 수 있기로 합니다.

④ 보증채권자는 조합이 요청한 자료와 소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합니다.

제7조(보증금의 지급기한)

① 조합은 보증채권자의 보증금 청구문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의 심사자료 제출이 지연되거나 제출한 심사자료에 대해 정당한 이의가 있어 소명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 및 소명에 소요된 일수는 제외하기로 합니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건의 경위 및 원고의 해지통보

1) 이 사건 부산현장 도배공사 가) 원고는 시공구입사양서에 따라 C에 사전시공계획 발표회를 열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C은 2014. 9. 15. 14:00경 위 현장에서 시공계획서에 의해 착공발표회를 가졌다. 이 시공계획서에는 공종별로 시공일정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천장석고조인트초배, 천장정배, 골조면 퍼티, 샌딩, 벽체부직포초배, 벽체정배, 잔손보기를 포함한 전 공정에 90일이 소요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착공일자와 완료일자가 특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위 시공계획서를 바로 승인하지 아니하고, 2014. 9. 19.경 C에 '도배공사 공정표, 인력투입계획 및 자재반입일정 제출요청'이라는 공문을 통해, 이 사건 부산현장 도배공사를 11월 초부터 진행할 예정이니 이 일정에 맞춰 구체적인 도배공사 전체 공정표(월, 일 표시), 인력투입계획 및 자재 반입일정을 2014. 9. 24.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실질적인 공사종료 시점은 입주자 사전점검일 전인 2015. 3. 31.이며, 이후 계약기간 종료시점인 2015. 6. 30.까지는 잔손보기 및 하자보수를 진행할 예정이니 공정표 작성에 참고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이 사건 부산현장 도배공사에 투입되는 자재에 대해 납품차질이 없다는 공급사의 확인 공문 내지 보증금 선납 후 자재 납품이 가능한 경우 보증금 납입증명서와 현장시공소장의 인적사항 및 전화번호 등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C은 2014. 9. 23.경 원고에게 동절기 공사는 불가하고, 동절기 공사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공사기일 내 근로 기간 동안 항상 상온을 유지할 것이 필요하며, 공사기일은 계약서상 2015. 6. 30.까지만 완료하면 되는 것이지 실질적인 공사 종료 시점을 임의로 정하여 통보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의 안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불법적인 요구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26.경 다시 C에, 당해 공사현장은 부산에 위치하여 동절기 기간에도 평균온도가 5℃ 이상이 유지되며, 이는 도배공사 시공가능 주위환경 온도인 5℃를 상회하는 온도이고, 현장에는 모두 외부 창이 설치되어 있어 세대 내부의 경우는 평균온도가 6℃를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기온저하로 공사가 곤란할 경우 원고가 보온대책을 강구할 예정이기에 동절기 기간에도 충분히 공사 진행이 가능하고, C은 절대공사기간으로 90일을 제시했지만, 원고는 2014. 11. 초부터 2015. 3. 31.까지 150일의 공사기간을 부여하면서 공사가 완료되는 예정공정표의 작성을 요구한 것인바, 원고가 요청한 시공계획서 보완, 공정표 작성, 자재 및 인력 투입계획의 제출은 시공구입사양서상의 C이 이행해야 하는 계약의 내용이므로 이를 2014. 10. 6.까지 제출해달라고 재차 촉구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C은 2014. 9. 30.경 원고에게 도배공사 세부 공정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선행공정인 내장목공사, 가구공사, 목창호 공사의 진행상황을 알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산현장의 전체 공정표, 선행공정별 공정표와 시공현황도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도배시공 전후 최저기온이 항상 5℃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부산지역 동절기 평균 최저 기온은 0.6℃로 도배현장 환경요구사항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0. 8.경 다시 C에, 선행공정별 공정표를 요구하는 것은 C이 제출해야 할 상세 공정표 작성과 관련이 없고, 이미 현장의 공정진행을 감안하여 각 동별 도배공사 착수 필요시점을 알렸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면서, 도배공사의 경우 최종마감 공종에 해당되어 공정 지연시 아파트 공사의 전체공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리고 다시 공정표,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등을 2014. 10. 13.까지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다.

사) C은 위 기한까지 공정표,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2014. 10. 13.경 원고에게, 원고의 요구처럼 11월 초 정상적인 도배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선행공정의 현재 진행상황이 포함된 전체공정표가 필요하므로 이를 2014. 10. 16.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동절기 도배공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도배공사 시공 전, 후 약 7일 동안의 최저기온이 5℃를 상회할 경우에 부분적으로 공사 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아) 이에 원고는, 원고가 도배공사 착공 예정일로 통보한 2014. 11. 1.에 가까운 2014. 10. 30.경 C에, 수차례 서면을 통하여 공사수행을 전제로 한 세부공정표 및 자재/인력 투입계획서 제출을

최고하였으나 C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계약이행을 통해 본 공사의 목적을 정상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부산현장 도배공사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C에 도달하였다.

2) 이 사건 구리현장 도배공사 가) C의 목업공사 시행

(1) 이 사건 구리현장 도배공사에 관한 시공구입사양서 3. 8. 8.조에는 "본 공사용 시공물량을 제외한 순수 MOCK-UP용(샘플하우스, 이하 '목업'이라고 한다) 공사 및 해체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C의 부담으로 한다[목업시공(F, GBL 각 3세대, 총 6세대)은 본공사 착수 전 검토를 위한 것으로 재시공 조건이며, 이를 견적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추가정산은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C은 위 시공구입사양서에 따라 이 사건 구리현장 도배공사 F, G블록에 대해 각 3세대씩 총 6세대의 목업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원고는 그 후인 2014. 7. 23. C에 위 6세대 이외에 새로 G블록 84G 타입의 목업 1세대(이하 '추가세대'라 한다)를 추가 건립하기 위하여 자재를 2014. 8. 2.까지 준비하라고 하면서 당초 진행한 6세대의 손보기 부분이 미흡한 구간(마감부 들뜸 현상 등)도 추가 세대 작업시 함께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작업지시를 하였다. 이에 C은 추가 세대의 목업공사를 일부 시공하다가 침실 2개소의 작업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된 공사비 지급문제들을 제기하며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30.경 C에 구리아파트 공사현장의 잔여공사일정표 및 도배자재목록표를 보내면서, 상세공정표, 인력투입계획 및 자재수급계획 등을 7일 이내에 제출하되, 제출 후 현장의 시공팀과 협의를 진행해달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다) C은 2014. 10. 2.경 원고에게 선행공정을 볼 때 도배공사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며, 원고의 전체공정표에는 도배공사기간을 2014. 10. 초경부터 2015. 1. 말경까지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리 지역 동절기 온도로 볼 때 11월 말부터 2월 말까지는 동절기 공사는 불가하므로, 선행공정 진행상황에 따라 도배공사를 준비하고 있어 이에 맞는 예정공정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회신을 하고, 아울러 C이 제시한 견적대로 목업공사 비용을 확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원고에게 원고가 제시한 공정기간과는 별개의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0. 10.경 C에 동절기 공사기간 중 세대난방조치 등 공사 진행에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할 것이니 이에 맞추어 재작성한 예정공정표와 아직 제출하지 아니한 자재투입계획, 인원투입계획 등을 2014. 10. 16.까지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아울러 목업공사비와 관련해서는 상호확인후 처리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21. C에 위 서류들의 제출을 촉구하면서, 현재 천장도배작업이 가능함에도 인력 및 자재 투입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적기준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C의 계약이행을 촉구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0. 24. 다시 C에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구리현장 도배공사의 예정공정표를 보내면서, 원고와 C이 2014. 10. 22.경 구두 상으로 확인한 대로 F블록은 2014. 11. 1.부터 작업자 8명을, G블록은 2014. 11. 15.부터 작업자 6명을 투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 각 서류를 2014. 10. 28.까지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다.

사) 원고는 2014. 10. 28.경 다시 C에, 현재 공정상 도배공사 착수가 불가하다는 C의 입장에 대해 '선행공사가 전체 완료된 이후가 되어야만 도배공사 착수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현재 구리아파트 공사현장 F블록의 경우 10층 이하 천장 및 몰딩공사가 완료되어 2014. 11. 1. 이전이라도 천장도배공사 착수가 가능하고, G블록도 2014. 11. 10.이면 천장작업이 종료되므로 그 이전에 천장 및 몰딩작업 완료세대의 천장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C이 선행공정을 이유로 작업자 및 자재투입을 지연하고 있으나, 충분히 도배공사 착수가 가능하므로 상세예정공정표 및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해줄 것을 촉구한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아) 원고는 2014. 10. 30.경 C에, 수차례 서면을 통하여 공사수행(동절기 공사진행 포함)을 전제로 한 세부공정표 및 자재/인력 투입계획서 제출을 최고하였으나 C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구리아파트 현장 목업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등 계약이행과 관련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계약이행을 통해 본 공사의 목적을 정상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구리현장 도배공사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C에 도달하였다.

다. 관련사건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C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모두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2014가합56185(본소), 2015가합53558(반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5. 24. 원고는 C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는 모두 적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C이 항소하였으나 2018. 1. 19.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2017나2032747(본소), 2017나2032754(반소)]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각 보증금 청구 통지

원고가 2017. 4. 6.경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서를 첨부하면서 C의 계약불이행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으로 108,968,204원(= 13,387,781원 + 19,132,194원 + 76,448,229원)을 청구하였다가, 2017. 4. 18.경 다시 계약관계서류, 계약해제문서, 월별 기성지급 총괄표, 검사지급조서 및 세금계산서, 기성지급 금융기관 거래사실 확인서, 당초·변경·정산 및 후속업체 내역 대비표, 손실금액 산출 총괄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으로 87,308,275원(= 13,387,781원 + 19,132,194원 + 54,788,300원)을 청구하였으며, 2017. 4. 25.경과 2017. 5. 17.경, 2017. 5. 30.경, 2017. 6. 21.경에도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 각 통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 32 내지 3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C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87,308,27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된 것은 타현장(강릉시) 도배공사와 관련하여 C이 원고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신고한 데 따른 보복조치였고, C이 2014. 10. 28.경 이 사건 부산현장

도배공사를 위하여 샌딩작업자를 투입하였음에도 원고가 C의 작업을 막고 철수를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C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의 보증금지급채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후속업체와 사이에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재료비와 노무비가 과다하게 상승하였고, 잔여 수량이 아닌 당초 하도급계약 상의 수량을 기준으로 후속 공사대금을 책정하였으며, 특히 이 사건 구리현장 도배공사와 관련하여서는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목업공사비용을 손해액에 포함시켰는바, 후속공사금액에서 원고와 C 사이에 목업공사비용을 고려하여 타절되고 남은 잔액이 아닌 당초의 공사대금 전부를 뺀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에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예정공정표 또는 수정된 예정공정표와 인원투입계획, 자재반입일정의 제출 및 공사의 착공을 촉구하였으나, C이 원고가 제시한 공정일정에 맞지 않는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원고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원고에게 수정된 예정공정표, 인력투입계획, 자재반입일정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C의 계약조건 위반, 계약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 등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가 2014. 10. 30.경 C에 하도급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위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이 그 무렵 C에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원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계약보증약관 제3조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C의 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액에 상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강릉 도배공사 현장의 분쟁에 따른 보복조치로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강릉시 도배공사와 관련하여 이는 민사사안이고 원고가 공사대금을 공탁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에 대하여도 C이 예정공정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계약조건에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부당하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피고가 지급할 보증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계약보증약관에 의하면 보증사고 발생시 피고는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손해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 손해액이란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나머지 계약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가된 금액을 말하는 사실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갑 제26, 29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과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뒤, 후속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4. 12. 1.경 이 사건 부산현장 도배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787,500,000원, 공사기간 2014. 12. 1.부터 2015.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2014. 12. 3.경 이 사건 구리현장 도배공사 중 F블록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200,800,000원, 공사기간 2014. 12. 3.부터 2015. 4.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2014. 12. 3.경 이 사건 구리현장 도배공사 중 G블록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146,700,000원, 공사기간 2014. 12. 3.부터 2015. 4.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C의 기성고에 따른, 이 사건 부산현장 도배공사의 타절금액은 4,258,300원이고, 이 사건 구리현장 도배공사 중 F블록의 타절금액은 8,844,000원이며, 이 사건 구리현장 도배공사 중 G블록의 타절금액은 2,941,000원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C이 목업공사비용을 부담하되 이를 견적에 반영하고 추가정산은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목업공사비용을 포함하여 하도급대금이 정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C은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 본 도배공사를 시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부산현장에 도배공사 준비를 위한 인력을 투입하거나 이 사건 구리현장의 목업공사를 시행한 점, 기존 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한 경우 시공 준비 기간의 단축 등으로 시일이 촉박하거나 선행 공사의 작업 오류에 대한 리스크 등으로 공사대금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원고는 C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통보를 한 2014. 10. 30.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11. 21.경 H을 포함한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전자입찰) 방식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하였고, 위와 같은 하수급업체의 선정 및

하도급대금 결정과정에 별다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하기도 전에 그 지급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후속업체와 사이에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후속계약을 체결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C이 목업공사를 시행하였고 실제로 도배작업을 실시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부산현장과 구리현장의 각 도배공사를 준비하면서 인력을 투입하는 등 그 과정에서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와 같이 타절금액을 정한 것이 부당하게 보이지는 않는 점, 후속업체인 H과의 하도급계약은 공사기간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보다 단축되었는데, 그 공사단가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단가보다 10% 정도 증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H과 새로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초 C과 사이의 하도급계약 당시의 기준 공사물량과 동일한 물량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보다 10% 정도 상승한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정한 것은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계산된 후속공사대금에서 C의 기성공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뺀 차액을 C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나머지 계약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가된 금액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C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산현장 도배공사에 대하여는 보증금액인 76,448,229원의 범위 내에서 증가된 공사금액인 54,788,300원 [= 이 사건 부산현장 도배공사 관련 하도급계약 해지 후 H과 체결한 잔여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 787,500,000원 -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될 당시 C의 기성공사대금을 정산한 후 남은 공사대금 732,711,700원(= 736,970,000원 ~ 4,258,3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구리현장 도배공사 중 F블록에 관하여는 보증금액인 19,132,194원의 범위 내에서 증가된 공사금액인 19,944,000원 [= 이 사건 구리현장 도배공사 중 F블록 하도급계약 해지 후 H과 체결한 잔여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 200,800,000원 -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될 당시 C의 기성공사대금을 정산한 후 남은 공사대금 180,856,000원(= 189,700,000원 - 8,844,000원)] 상당의, 이 사건 구리현장 도배공사 중 G블록에 관하여는 보증금액인 13,387,781원의 범위 내에서 증가된 공사금액인 16,141,000원 [= 이 사건 구리현장 도배공사 중 G블록 하도급계약 해지 후 H과 체결한 잔여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 146,700,000원 -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될 당시 C의 기성공사대금을 정산한 후 남은 공사대금

130,559,000원(= 133,500,000원 - 2,941,000원)] 상당의 각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2017. 4. 18.경 C의 계약불이행 사실을 고지하고 계약관계서류, 계약해제문서, 손실금액 산출 총괄표 등을 송부하면서 보증금 87,308,275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통보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액 범위 내의 원고의 실제손해액 합계액인 87,308,275원(= 54,788,300원 + 19,132,194원 + 13,387,78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0.(원고는 피고에 대한 보증금 청구가 2017. 4. 6.경 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7. 4. 6.경 피고에게 계약이행보증서를 첨부하면서 C의 계약불이행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으로 108,968,204원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만으로는 C의 구체적인 채무불이행 내역 및 이에 따른 보험사고의 발생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피고가 C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계약해지 관련 서류를 전부 제출하여 피고에게 접수된 2017. 4. 19.경1) 으로부터 피고가 보험금지급채무의 존부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60일의 조사기간이 경과한 2017. 6. 19.경 피고가 C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위 지급예정일 다음날인 2017. 6. 20.부터 이 사건 보증금 지급에 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판사

판사이판사

판사박판사

1) 위 내용증명우편은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